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23 선고 2019나4538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,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성

담당변호사 김덕현

피고,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원

변론 종결 2020. 9. 25

판결선 고 2020. 10. 23

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8가단5062078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. 7. 14. 접수 제37426호,같은 등기소 2016. 6. 16. 접수 제2540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

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것으로인정된다.

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

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성철판사 이수진판사 박동복

별지